

제2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제2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VR(가상현실)체험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0. 4. 10. ~ 4. 16.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4월 16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gowoon@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순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숙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178호
----------	--------

발의연월일 : 2020. 4. 9.
발 의 자 : 장숙희 의원
이영란 의원
박혜정 의원

1. 제정이유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나. 시장 및 시민의 책무. (안 제3조 ~ 제4조)
- 다. 지원사업 등. (안 제5조)
- 라.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안 제6조)
- 마. 포상. (안 제7조)
- 바. 비밀준수의 의무. (안 제8조)
- 사. 준용. (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 다.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례 : 전국 10개 기초단체(광역4, 기초6)

순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이란 법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 개발에 노력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순천시민은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의 분위기 조성에 노력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순천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7조(포상) 시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소속회원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5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준용)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194호
----------	--------

발의연월일 : 2020. 4. 10.

발 의 자 : 이영란 의원
김미연 의원

1. 개정이유

- 우리 시의 출산장려, 육아지원 등을 위해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여 현재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혜택을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 시행코자 함.

2. 주요내용

-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의 다자녀 기준 변경
· (현행) 3자녀 이상 ⇒ (변경) 2자녀 이상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둘째 이상 자녀”란 부와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두 등재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있는 형제·자매 중 둘째 이상 자녀를 말한다. 이 경우 부와 모의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중 부 또는 모가 실제 양육하면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있는 자녀도 자녀의 수에 포함한다)

제2조 제5호 중 ““1가구 3자녀이상 세대증(이하 “세대증”이라 한다)이란 3자녀”를 ““다자녀가정 세대증(이하 “세대증”이라 한다)”이란 2자녀”로 한다.

제7조 제3항 중 “3자녀이상”을 “2자녀이상”으로 “다만, 제19호는 2년간 지원할 수 있고, 제20호는 1년간 면제 할 수 있다.”를 “다만, 제19호는 출생한 날로부터 2년간 지원할 수 있고, 제20호는 출생한 날로부터 1년간 면제 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3자녀이상”을 “2자녀이상”으로 한다.

제10조의2 중 “읍·면·동장”을 “시장”으로 하고, “3자녀이상 자녀 세대로”를 “다자녀가정으로”로 한다.

제13조 제1항 제3호 중 “다자녀 가정을 위한 3자녀이상”을 “3자녀이상 가정을 위한”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명 “1가구 3자녀이상 세대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 을
“다자녀 세대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 으로 하고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자녀이상 다자녀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출생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호 라목 중 ““1가구 3자녀이상 세대증명서” 를” 을 ““다자녀가정 세대증” 을” 로 한다.

② 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제6호 중 “「순천시 3자녀 이상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 ” 을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다자녀가정 세대증” ” 으로 한다.

③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순천시 3자녀 이상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 ” 을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다자녀가정 세대증” ” 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제3호 중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 ” 을 ““다자녀가정 세대증” ” 으로 한다.

④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 제2호 마목 중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 ” 을 ““다자녀가정 세대증” ” 으로 한다.

⑤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아목 중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 ” 을 ““다자녀가정 세대증” ” 으로 한다.

- ⑥ 순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제6호 중 “3자녀이상 자녀” 를 “2자녀이상 자녀” 로 한다.
- ⑦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로 한다.
- ⑧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호 중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 을 ““다자녀가정 세대증”” 으로 한다.
- ⑨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7 제3항 제1호 ““1가구 3자녀이상 세대 증명서”” 를 ““다자녀가정 세대증명서”” 로 한다.
- ⑩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제3호 중 ““1가구 3자녀이상 세대증”” 을 ““다자녀가정 세대증”” 으로 한다.
- ⑪ 순천시 아이사랑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4호 중 ““1가구 3자녀이상 세대증”” 을 ““다자녀가정 세대증”” 으로 한다.
- ⑫ 순천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4호 중 ““1가구 3자녀이상 세대증”” 을 ““다자녀가정 세대증”” 으로 한다.
- ⑬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중 ““1가구 3자녀이상 세대증”” 을 ““다자녀가정 세대증”” 으로 한다.
- ⑭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7호 중 ““1가구 3자녀이상 세대증”” 을 ““다자녀가정 세대증”” 으로 한다.
- ⑮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5항 제6호 중 “「순천시 3자녀 이상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 을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세대증’ ” 으로 한다.

⑩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 제4호 중 ““1가구 3자녀이상 세대증” ” 을 “ “다자녀가정 세대증” ” 으로 한다.

⑪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호 가목 중 “1가구 3자녀이상 세대증” ” 을 “ “다자녀가정 세대증” ” 으로 한다.

⑫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5호 중 “1가구 3자녀이상 세대증” ” 을 “ “다자녀가정 세대증” ” 으로 한다.

⑬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호 중 “1가구 3자녀이상 세대증” ” 을 “ “다자녀가정 세대증” ” 으로 한다.

⑭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제5호 중 “ “1가구 3자녀이상 세대증” ” 을 “ “다자녀가정 세대증” ” 으로 한다.

⑮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5호 중 “ “1가구 3자녀이상 세대증” ” 을 “ “다자녀가정 세대증” ” 으로 한다.

⑯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제6호 중 “ “1가구 3자녀이상 세대증” ” 을 “ “다자녀가정 세대증” ” 으로 한다.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신생아 양육비,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급) 4.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 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 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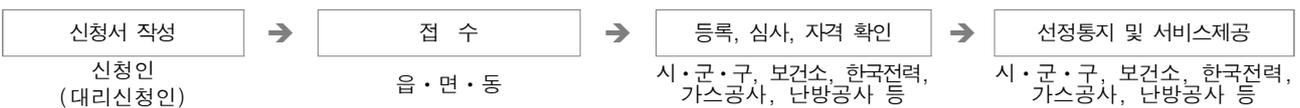
-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에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전기료, 지역난방요금, 도시가스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 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여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 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별지 제2호 서식]

다자녀가정 세대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예시)

← 세 대 증 →
8.7cm

5.5cm

No. 00-000

사 진

4cm
3cm

다자녀가정 세대증
세대주 성명 : 홍 길 동
생년월일 : 0000.00.00.
주 소 : 전남 순천시 oo로(길)oo
유효기간 : 2000.00.00 ~ 2000.00.00

20 . 0. 0.
순천시장 (직인)

△ 전 면 ∇

○ 세대원 현황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대상자에 한함)

세대주와관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주소변경사항

주 소 변 경	확인일자

△ 후 면 ∇

※ 비 고

1. 기재사항

- No. : 세대증 발행번호(예: 순천시 20-01)
- 사 진 : 3cm × 4cm
- 성 명 : ○ ○ ○
- 생년월일, 주소
- 유효기간 : 2자녀이상 자녀가 출생한 날로부터 13년 간

2. 재질은 플라스틱 카드

3. 색상은 흰색바탕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 략)</p> <p>3. “3자녀이상 자녀”란 부와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두 등재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있는 형제·자매 중 셋째 이상 자녀를 말한다. 이 경우 부와 모의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중 부 또는 모가 실제 양육하면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있는 자녀도 자녀의 수에 포함한다.</p> <p>4. (생 략)</p> <p>5. “1가구 3자녀이상 세대증(이하 “세대증”이라 한다)이란 3자녀 이상 가구를 우대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p> <p>제7조(출산장려금 등 지원내용)</p> <p>① ~ ② (생 략)</p> <p>③ 시장은 3자녀이상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13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문화·복지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9호는 2년간 지원할 수 있고, 제20호는 1년간 면제할 수 있다.</p> <p>1. ~ 20.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둘째 이상 자녀”란 부와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두 등재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있는 형제·자매 중 둘째 이상 자녀를 말한다. 이 경우 부와 모의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중 부 또는 모가 실제 양육하면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있는 자녀도 자녀의 수에 포함한다)</u></p> <p>4. (현행과 같음)</p> <p>5. <u>“다자녀가정 세대증(이하 “세대증”이라 한다)”이란 2자녀 ----- ----- -----.</u></p> <p>제7조(출산장려금 등 지원내용)</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u>2자녀이상</u>----- ----- -----다만, 제19호는 <u>출생한 날로부터</u> 2년간 지원할 수 있고, 제20호는 <u>출생한 날로부터</u> 1년간 면제할 수 있다.</p> <p>1. ~ 20. (현행과 같음)</p>

순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179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4. 9.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 위반 소지 제거 및 상·하위법령 간 통일성 확보를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범위를 다르게 규정한 조례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 제2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3. 2. ~ 3. 23.)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2. 25.(여성가족과-4144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2. 24.(기획예산실-2787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3. 2.(순천시 공고 제2020-415호)

순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3183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4. 9.

1. 제안이유

- 전화, 인터넷, 모바일, 팩스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순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명칭 (안 제1조 ~ 안 제2조)
- 민원콜센터의 위치 (안 제3조)
 - 순천시청 내에 설치,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시설 이용할 수 있다.
- 민원콜센터 기능(안 제4조)
 - 상담안내 및 중계, 상담정보 및 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 상담원관리 및 교육훈련, 상담품질 평가 및 고객 만족도 조사 등
- 민원콜센터 시설 및 장비(안 제5조)
 -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비, 상담실, 휴게실, 교육실 등
 -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 및 제반 편의시설
- 민원콜센터 관리 및 운영(안 제6조)
 -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무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콜센터 수탁자의 의무(안 제7조)
 - 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상담원을 확보하여야 함.

- 위탁운영기간 중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
- 상담원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 정보에 관하여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됨.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의견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3. 2. ~ 2020. 3. 23.)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예산부서 심의필 : 2020. 2. 21.(허가민원과-7252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2. 25.(여성가족과-4086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2. 28.(기획예산실-316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3. 2.(순천시 공고 제452호)

순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인터넷·모바일·팩스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순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콜센터의 명칭은 순천시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위치) 콜센터는 순천시청 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인터넷·모바일·팩스 등을 통한 시민요구사항 상담·안내 및 중계
2. 상담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상담원 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4. 상담품질 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
5.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
6. 콜센터 운영시스템 관리·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제5조(시설 및 장비) ① 순천시청(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계 장비 등
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
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교육실

4. 그 밖의 콜센터 운영을 위한 제반 편의시설

②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계 장비는 별도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콜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콜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상담원을 확보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전화민원에 대하여 항상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상담원과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상담원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 정보에 관하여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콜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하게 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표준화된 상담매뉴얼, 성희롱대처 등 콜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시에 중대한 해를 끼쳤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콜센터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공익상 콜센터를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제3조(위치) 콜센터는 순천시청 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시설 및 장비) 시장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하거나 전문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하여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및 운영)
 -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순천시 민원콜센터 구축.운영에 따른 예산 수반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총 비용(a-b)	0	0	0	0	0	0
세입(a)	4,845.9	468.1	780.2	1,199.2	1,199.2	1,199.2
시 비	4,845.9	468.1	780.2	1,199.2	1,199.2	1,199.2
세출(b)	4,845.9	468.1	780.2	1,199.2	1,199.2	1,199.2
시스템 구축 (자체구축,리스)	1,368	152	304	304	304	304
감리비	70	70				
장소임차료	439.9	79.1	90.2	90.2	90.2	90.2
상담원 인건비	2,553	32	376	715	715	715
		2명(4개월)	12명	20명		
인테리어 공사	100	100				
비품 구입	25	5	5	5	5	5
교육, 홍보, 유지보수 운영비등	290	30	5	85	85	85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4,845.9	468.1	780.2	1,199.2	1,199.2	1,199.2
시 비	4,845.9	468.1	780.2	1,199.2	1,199.2	1,199.2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사업기간 : 2020년

○ 대상사업 : 7개 단위사업

○ 산출액 및 산출근거 : 468,100천원

- 시스템 구축비 리스금액(6개월) : 25,340,000원×6회 = 152,000천원
- 시스템 구축 감리비용 : 70,000,000원×1회 = 70,000천원
- 장소임차료 보증금 34,000,000원+ 월세 (7,516,666원×6개월) = 79,100천원
- 상담원 인건비 : 4,000,000원×2명×4개월 = 32,000천원
- 인테리어 공사 : 100,000,000원×1식 = 100,000천원
- 비품 구입 : 5,000,000원×1식 = 5,000천원
- 교육 및 홍보,운영비 : 30,000,000원 = 30,000천원

○ 사업기간 : 2021년

○ 대상사업 : 5개 단위사업

○ 산출액 및 산출근거 : 780,200천원

- 시스템 구축비 리스금액(12개월) : 25,340,000원×12회 = 304,000천원
- 장소임차료 : 7,516,666원×12개월 = 90,200천원
- 상담원 인건비 : 376,000천원
 - 4,000,000원×2명×12개월 = 96,000천원
 - 2,333,333원×10명×12개월 = 280,000천원
- 비품 구입 : 5,000,000원×1식 = 5,000천원
- 교육 및 홍보,운영비 : 5,000,000원 = 5,000천원

○ 사업기간 : 2022년~2024년

○ 대상사업 : 5개 단위사업

○ 산출액 및 산출근거 : 1,199,200천원

- 시스템 구축비 리스금액(12개월) : $25,340,000\text{원} \times 12\text{회} = 304,000\text{천원}$
- 장소임차료 : $7,516,666\text{원} \times 12\text{개월} = 90,200\text{천원}$
- 상담원 인건비 : 715,000천원
 - (센터장1명,QA2명) $4,000,000\text{원} \times 3\text{명} \times 12\text{개월} = 144,000\text{천원}$
 - $2,799,000\text{원} \times 17\text{명} \times 12\text{개월} = 571,000\text{천원}$ (상담원 인건비 상승 적용)
- 비품 구입 : $5,000,000\text{원} \times 1\text{식} = 5,000\text{천원}$
- 교육 및 홍보,운영,유지보수 : 85,000천원
 - 교육 및 홍보운영비 : $5,000,000\text{원} = 5,000\text{천원}$
 - 유지보수료 $1,200,000,000\text{원} \times 7\% = 80,000\text{천원}$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없음

8. 작성자(참여자)

허가민원과 과장 조영익 (☎5505)

허가민원과 담당 김수련 (☎5813)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184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4. 9.

1. 개정이유

- 코로나19 재난으로 휴·폐업, 실직, 경제적 위기에 놓인 세대 긴급지원 여건 마련

2. 주요내용

- 제1조(목적) 관련 법령 조항 수정 및 법령 추가
- 제2조(지원대상자)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대상 추가
- 제3조(지원내용) 지원 대상 추가에 따른 지원내용 조호 신설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순천시 법무행정 처리 규칙」 제14조(예고의 예외) 제1호 “당해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사전예고 생략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4. 1.(여성가족과-7122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3. 31.(전략기획과-464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해당 없음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 제1항” 을 “제5조의2제3항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으로 한다.

제2조제12호 중 “실직, 사고, 사업실패, 질병, 수해,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 를 “실직, 사고, 사업실패, 질병, 수해, 화재,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 로 한다.

제3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금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4조 제1항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지원대상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시설·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1.~11. (생략)</p> <p>12. <u>실직, 사고, 사업실패, 질병, 수해,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u></p> <p>13.~14. (생략)</p> <p>제3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1.~9.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② (생략)</p>	<p>제1조(목적) ----- 제5 <u>조의2제3항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u>-----</p> <p>-----</p> <p>-----</p> <p>-----</p> <p>-----</p> <p>제2조(지원대상자) -----</p> <p>-----</p> <p>-----</p> <p>-----</p> <p>-----</p> <p>-----</p> <p>1.~11. (현행과 같음)</p> <p>12. <u>실직, 사고, 사업실패, 질병, 수해, 화재,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u></p> <p>13.~14. (현행과 같음)</p> <p>제3조(지원내용) ① -----</p> <p>-----</p> <p>-----</p> <p>-----</p> <p>1.~9. (현행과 같음)</p> <p><u>10.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금품</u></p> <p>② (현행과 같음)</p>

순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홍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177호
----------	--------

발의연월일 : 2020. 4. 9.

발 의 자 : 정홍준 의원

이복남 의원

박계수 의원

1. 제정이유

- 순천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책 읽는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제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3조)
- 나.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 다.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6조)
- 라.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10조)
- 마. 업무의 위탁 (안 제11조)
- 바. 포상 (안 제12조)
- 사. 시행규칙 (안 제13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 다. 타 지자체 입법사례 : 전국 47(광역시 16, 기초 41, 전남 0)

순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책 읽는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 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서점 현황 파악 및 여건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서점 지원) 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 및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지원
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등 마케팅 지원
4.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전시·공연, 저자초청, 교육, 동아리활동 등 각종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5.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순천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활성화 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지역서점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
3. 순천시 시립도서관 관계자
4. 대학의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6.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 등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지역서점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 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180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4. 9.

1. 개정이유

- 우리시 입지 여건에 적합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바이오산업, 지식정보문화산업, 신대 의료부지 국내의료기관 등을 순천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에 추가하고 우리시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입지보조금 지원 사항 및 신대 의료부지에 국내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지원 사항 신설(안 제5조)
- 신대지구 국내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지원 사항 신설(안 제7조)
-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16조)
- 순천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에 국내투자 관련 교육·보건 서비스업, 지식정보 문화산업, 바이오산업을 신설(별표)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3. 2. ~ 3. 23.)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2. 20.(여성가족과-3763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2. 25.(기획예산실-2943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2. 27.(순천시 공고 제2020-440호)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입지보조금은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 하거나 시로 이전하는 경우에 산업단지 분양가 또는 매입가의 30퍼센트 범위 내 최대 4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제9항 중 “제2조제7항”을 “제2조제7호”로 한다.

제5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신대지구 의료부지에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국내의료기관 사업자에게 의료부지 매각대금 범위 내에서 시설비(건축, 의료장비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에 의한 국내의료기관(외국인 전용 진료시설 및 기능을 갖춘 국내의료기관)
 2. 500병상 이상, 최첨단 의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3. 총투자규모 3,000억 원 이상
 4. 고용인원 500명 이상

제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신대 의료부지 국내의료기관은 건축물 착공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제16조제2항 중 “2021년 12월 31”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제3조제2항과 관련)

산업명	적용 산업 내용	비고
제조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고시된 산업분류 항목 중 중분류 부호 10 ~ 33까지 항목에 해당되는 산업체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외국인투자관련 교육·보건 서비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고시된 산업분류번호 외국인학교(85420), 국제학교 ○ 외국인병원	
연구소 연구개발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고시된 산업분류 70111~70209까지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산업체	
대고객 서비스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고시된 산업분류기준에 의한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외국인 투자 제외)	
국내투자 관련 교육·보건 서비스업	○ 의료법 제33조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 - 외국인 전용 진료시설 및 기능을 갖춘 국내 의료기관	
지식정보 문화산업	○ 지식·정보·문화를 활용하여 제조·생산시설 없이 사무실과 인력만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 ICT 관련 업체 - VR, AR 등 실감형 콘텐츠 업체 - 게임, 영상, 만화·웹툰 등 문화형 콘텐츠 업체 등	
바이오산업	○ 바이오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모든 산업 - 유전자 재조합 기술 - 세포융합기술, 대량배양기술, 바이오리액터 기술 - 의약품, 화학, 식품, 섬유 등에서의 유전자 재조합 기술 - 농업, 화학, 공업 분야에서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 식품기자재, 유통, 농수산물 가공업체	
기타 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고시된 산업분류기준 - 동식물원(90231), 박물관(90221), 도서관(90211) - 골프장시설산업(91121) : 골프장(규모 18홀이상 시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투자에 대한 지원) ① ~ ④ (생략)</p> <p>⑤ 시장은 제3조의 조건을 갖춘 국내자본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제조업과 대고객 서비스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 및 비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p>1. ~ 4.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⑥ ~ ⑧ (생략)</p> <p>⑨ -----<u>제2조제7항</u>----- ----- -----.</p> <p>⑩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5조(투자에 대한 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입지보조금은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시로 이전하는 경우에 산업단지 분양가 또는 매입가의 30퍼센트 범위 내 최대 4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u></p> <p>⑥ ~ ⑧ (현행과 같음)</p> <p>⑨ -----<u>제2조제7호</u>----- ----- -----.</p> <p>⑩ (현행과 같음)</p> <p>⑪ <u>시장은 신대지구 의료부지에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국내 의료기관 사업자에게 의료부지 매각대금 범위 내에서 시설비(건축, 의료장비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p>1. 「의료법」 제33조에 의한 외국인 전용 진료시설 및 기능을 갖춘 국내의 <u>료기관</u></p> <p>2. <u>500병상 이상 최첨단 의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u></p> <p>3. <u>총투자규모 3,000억 원 이상</u></p> <p>4. <u>고용인원 500명 이상</u></p>

현행	개정안
<p>제7조(지원방법) ① 모든 지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거 지원결정 하되, 지원신청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5.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16조(기금의 용도 및 존속기한) ① (생략)</p> <p>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1년 12월 31일</u> 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7조(지원방법) ①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u>6. 국내 의료기관은 건축물 착공 신고 일로부터 3년 이내</u></p> <p>제16조(기금의 용도 및 존속기한)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2024년 12월 31일</u> ----- ----- -----.</p>

현 행

「별표」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 (제3조제2항과 관련)

산업명	적 용 산 업 내 용	비고
제조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고시된 산업분류 항목 중 중분류 부호 10 ~ 33까지 항목에 해당되는 산업체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외국인투자관련 교육·보건 서비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고시된 산업분류번호 외국인학교(85420), 국제학교 ○ 외국인병원	
연구소 연구개발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고시된 산업분류 70111~70209까지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산업체	
대고객 서비스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고시된 산업분류기준에 의한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외국인 투자 제외)	
기타 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고시된 산업분류기준 - 동식물원(90231), 박물관(90221), 도서관(90211) - 골프장시설산업(91121) : 골프장(규모 18홀이상 시설)	

개 정 안

「별표」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 (제3조제2항과 관련)

산업명	적 용 산 업 내 용	비고
제조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고시된 산업분류 항목 중 중분류 부호 10 ~ 33까지 항목에 해당되는 산업체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외국인투자관련 교육·보건 서비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고시된 산업분류번호 외국인학교(85420), 국제학교 ○ 외국인병원	
연구소 연구개발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고시된 산업분류 70111~70209까지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산업체	
대고객 서비스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고시된 산업분류기준에 의한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외국인 투자 제외)	
국내투자 관련 교육·보건 서비스업	○ 의료법 제33조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 - 외국인 전용 진료시설 및 기능을 갖춘 국내 의료기관	
지식정보 문화산업	○ 지식·정보·문화를 활용하여 제조·생산시설 없이 사무실과 인력만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 ICT 관련 업체 - VR, AR 등 실감형 콘텐츠 업체 - 게임, 영상, 만화·웹툰 등 문화형 콘텐츠 업체 등	
바이오산업	○ 바이오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모든 산업 - 유전자 제조합 기술 - 세포융합기술, 대량배양기술, 바이오리액터 기술 - 의약품, 화학, 식품, 섬유 등에서의 유전자 제조합 기술 - 농업, 화학, 공업 분야에서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 식품기자재, 유통, 농수산물 가공업체	
기타 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고시된 산업분류기준 - 동식물원(90231), 박물관(90221), 도서관(90211) - 골프장시설산업(91121) : 골프장(규모 18홀이상 시설)	

순천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181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4. 9.

1. 개정이유

- 규제입증 책임제 추진에 따라 상위법에 명시하지 않은 과도한 보고 의무 조항 완화
- 협의회 운영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농공단지 활성화를 유도

2. 주요내용

- 농공단지 협의회 운영지원 근거 신설(안 제10조제5호)
- 등록규제정비 : 보고의무를 지도감독으로 완화하여 규정(안 제13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3. 2. ~ 2020. 3. 23)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의필 : 2020. 2. 20.(여성가족과- 376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2. 25.(기획예산실- 2833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3. 2.(순천시 공고 제2020-424호)

순천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공단지 협의회 운영 지원

제13조의 제목을 “지도·감독”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① 시장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시장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요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1.~4.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10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 ----- ----- -----.</p> <p>1.~4. (현행과 같음) 5. 농공단지 협의회 운영 지원</p>
<p>제13조(보고)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1. 매사업 년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사업년도 개시 2개월 이내)</p> <p>2. 매사업 년도의 수지결산(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내)</p> <p>3. 총회의 의사록(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p> <p>4. 제 규정의 제정 또는 폐(제정 또는 폐 후 2주일 이내)</p> <p>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1. 정관의 변경</p> <p>2.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편성 또는 변경</p> <p>3. 협의회 해산 또는 합병</p> <p>③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1.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의 직제 규명</p> <p>2.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의 사무국장 임명</p>	<p>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순천시 VR(가상현실)체험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3182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4. 9.

1. 제정이유

- VR(가상현실)체험존 완공에 따라 관람 및 매표시간, 시설이용료, 운영위탁 등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VR체험존 관람 및 매표시간 규정(안 제4조)
- VR체험존 시설이용료 징수 및 감면 규정(안 제5조)
- VR체험존 운영의 위탁 관련 사항 규정(안 제10조)
- VR체험존 위탁사무의 범위 규정(안 제13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3. 2. ~ 3. 23.)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3. 2.(여성가족과-459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2. 25.(기획예산실-2912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2. 27.(순천시 공고 제2020-441호)

순천시 VR(가상현실)체험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VR체험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VR체험존”이란 VR체험존 콘텐츠의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용료”란 VR체험존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자유이용권”이란 VR체험존 콘텐츠를 1일 5시간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말한다.
4. “1회권”이란 VR체험존 콘텐츠 중 1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말한다.

제3조(위치) 순천시 VR체험존(이하 “체험존”이라 한다)은 순천시 역전길 34 내에 둔다.

제2장 시설의 관람 및 운영

제4조(관람 및 대표시간) 시설의 관람 및 대표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 및 대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대표시간	이용시간
1월 ~ 12월 (화요일 ~ 일요일)	11:00 ~ 20:00	11:00 ~ 21:00

제5조(시설이용료 징수 및 감면) ① 시장(제10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한다)은 체험존 이용자로부터 시설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 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③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소지자는 별표1의 순천시민의 시설이용료를 적용한다.

④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6조(시설이용료 환불) 이미 징수한 시설이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관리자의 책임 등 환불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2. 정신질환자 및 고소 공포증이 있는 사람
- 3.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 4. 시설물 파손 우려가 있는 사람
- 5. 그 밖에 관리와 운영을 위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행위제한) ①이용자는 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시설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
- 2. 고성방가·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변상책임) 시장은 이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위탁 관리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체험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 시 수탁자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선정 등) ① 제10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을 희망하는 수탁자는 신청서와 함께 제안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1. 위탁운영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장비 등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재정부담 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4. 위탁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경험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2조(위탁기간) ① 체험존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사무의 범위) ①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체험존 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
2. 체험시설 유지 관리
3. 체험존 운영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방

4. 그 밖의 체험존 운영 관련 사업

② 수탁자는 사무가 변경될 때마다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체험존 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체험존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체험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위탁 철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체험존 운영규정) 수탁자는 운영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위탁계약의 철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그 밖의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수탁운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VR 체험존 시설이용료

(단위 : 원)

구 분	자유이용권 (5시간)	1회권 (1게임 이용)
개 인	15,000	3,000
순천시민	10,000	2,000

테스트베드 시설이용료

(단위 : 원)

구 분	2 시간	추가 1시간당
미디어룸 바이브룸	10,000	1,000
VR 장비대여	5,000	1,000

순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185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4. 9.

1. 개정이유

-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개정
 - 현 조례상의 위원회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한 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친환경농업분과 위원회가 대행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삭제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3. 2. ~ 2020. 3. 23.)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7.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2. 19.(여성가족과-3673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2. 24.(기획예산실-283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3. 2.(순천시 공고 제2020-419호)

순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중 “구성” 을 “기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운영 한다” 를 “운영하되 위원회의 기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한 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친환경농업분과위원회가 대행한다” 로 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
4. 축산분뇨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 비료 및 각종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
5.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증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
6.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
7. 친환경농산물 판로 대책에 관한 사항
8. 기타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u>구성</u>) ① 친환경농업육성계획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u>운영</u> 한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④ 위원회의 위원은 소속직원,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시의회의원, 친환경농업관련 민간단체 및 소비자단체 임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중 2분의1 이상은 외부인으로 위촉 하여야 한다.</p> <p>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⑦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두며 간사는 친환경농업 담당과장, 서기는 친환경농업 팀장으로 한다.</p> <p>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u>기능</u>) ① ----- ----- ----- 운영하되 위원회의 기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한 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친환경농업분과위원회가 대행한다.</p> <p>② ~ ⑧ <삭 제></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p> <p>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p> <p>2.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p>

현행	개정안
<p>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 4. 축산분뇨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 비료 및 각종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 5.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증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 6.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 7. 친환경농산물 판로 대책에 관한 사항 8. 기타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6조 ~ 제15조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 4. 축산분뇨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 비료 및 각종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 5.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증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 6.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 7. 친환경농산물 판로 대책에 관한 사항 8. 기타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제5조 ~ 제14조 (현행 제6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각각 같음)</p>

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미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제3175호
----------	--------

발의연월일 : 2020. 4. 9.

발의자 : 김미연 의원,
남정옥 의원

1. 제안이유

-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 요소를 줄여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필요
- 낙후된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침입범죄와 그로 인한 강력범죄 증가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조례에 관내 범죄다발지역 및 범죄취약지역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시설 설치 지원사항을 규정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명 정비(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 순천시 범죄 예방 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안 제3조)
 -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교류 증대, 쾌적한 환경 조성, 침입범죄 예방
-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6조)
 - 범죄예방 환경설계, 자원조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사업 평가 등
-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사업(안 제7조)
 -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침입범죄 예방 사업, 주차안심번호 서비스 사업 등
-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추진에 필요한 위원회 구성(안 제9조, 제10조)
-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제13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형법」 제319조, 제320조, 제321조, 제322조, 제330조, 제331조, 제334조, 제342조, 「건축법」 제53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순천시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 및 침입범죄 예방을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공단 및 시에서 50%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침입범죄”란 사람이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불법으로 침입하거나 침입 후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
4.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 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호시설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5. “방범시설 등”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도시공간, 시설물 등을 배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경 또는 조명 등으로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은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적절히 배치한다.
3. 지역주민이 도시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를 증대시켜 활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6. 침입범죄를 예방하여 침입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순천시민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고,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을 통해 안전한 생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순천시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다만,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5년마다 수립·시행 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기본법」에 따른 건축정책 기본계획 또는 「순천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위한 전략
3. 범죄예방 환경설계 현황 및 실태조사
4.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7.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사업
3. 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5.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6. 신도시사업, 도시재생사업,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7. 공공기관·단체·법인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교육
8. 범죄예방을 위한 주차안심번호 서비스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건축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방법시설 등 설치 지원) ① 시장은 방법시설 등 설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방법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제5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기관·단체들과 “방법시설 등 설치 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③ 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침입범죄 피해여부
2. 지원대상 가구의 경제적 능력
3. 침입범죄 피해의 위험성

제9조(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순천시 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순천시 경관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하되, 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순천시 건축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또는 관련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방법시설 등 침입예방 설치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순천경찰서, 순천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사업 완료 후 해당지역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주민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를 순천경찰서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협성 등 평가 지표(제8조 관련)

NO. 성 명

평가지표	5점 척도					점수
범죄발생 빈도 (신고건수)	1	2	3	4	5	
	10년에 1회	5년에 1회	3년에 1회	1년에 1회	1년에 1회 이상	
강력범죄 발생 (5대범죄)	1	2	3	4	5	
	없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범죄에 따른 재해(피해정도)	1	2	3	4	5	
	영향 없음	경미한 영향 (단순 절도, 1백만원 이하)	보통 (경미한 상해, 5백만원 미만 등)	중대재해 (상해,5백만원 이상 손해 등)	중대재해 (사망, 성폭력 등)	
소득수준	1	2	3	4	5	
	중위소득층 이상	중위소득층	차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침입위험도	1	2	3	4	5	
	전혀 위험하지 않음	위험하지 않음	보통	위험	매우위험	
인구학적 요소	1	2	3	4	5	
	3인 가구 이상	3인 가구	2인 가구	1인 가구, 한부모 가정 등	독거노인, 지체장애인	
주택노후도	1	2	3	4	5	
	5년 이하	5 ~ 10년	10 ~ 15년	15년 ~ 20년	20년 이상 주택	
주택 유형	1	2	3	4	5	
	침입이 매우 어려운 유형(신축 아파트, 주상복합 등)	침입이 어려운 유형(아파트, 주상복합 등)	보통 (연립주택 등)	침입이 용이한 유형 (원룸,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	침입이 매우 용이한 유 형(단독주택, 다세대, 원룸 등의 1,2층)	
감시시설 유무	1	2	3	4	5	
	감시시설 有 (경비원 있음)	감시시설 유 (CCTV 있음)	감시가능 여부 보통	CCTV가 있으나 사각지역 등	감시시설 無	
범죄유발시설과의 거리 (유흥시설, 터미널, 학교, 다중이용 시설 등)	1	2	3	4	5	
	5Km 이하	4Km 이하	3Km 이하	2Km 이하	1Km 이하	
야간 밝기	1	2	3	4	5	
	매우 밝음	밝음 (가로등 인근 지역, 적당 조도 등)	보통 (가로등이 있으나 조도가 낮은 지역)	어두움 (가로등 조도가 낮거나 거리가 먼지역)	매우 어두움 (가로등 없음)	
핫스팟(Hot Spot)	1	2	3	4	5	
	범죄다발지역 과 매우 많	범죄다발지역 과 거리가 있음	보통	범죄다발지역 인접	범죄다발지역	
합 계						

- 총 12개 항목으로 60점 만점기준 30점 이하는 지원불가

순천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명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176호
----------	--------

발의연월일 : 2020. 4. 9.

발 의 자 : 이명옥 의원
김미연 의원
이복남 의원
박계수 의원
장숙희 의원
허유인 의원
이현재 의원
이영란 의원
박혜정 의원
정홍준 의원

1. 제정이유

-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 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나. 조직구성 및 활동. (안 제3조)
- 다. 사업 및 보조금 등의 지원. (안 제4조 ~ 제5조)
- 라. 지도·감독, 평가 및 지원의 제한. (안 제6조 ~ 7조)
- 마. 포상. (안 제8조)
- 바. 준용. (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 나. 예산조치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 다. 타 지자체 입법례 : 전국 30개 지자체(광역1, 기초29 / 전남 : 광양,목포,함평)

순천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서 정한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순천시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전남지부 순천시지회를 말한다.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모범운전자회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
3.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활동 및 재난예방 활동
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 등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활동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제8조(포상)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195호
----------	--------

발의연월일 : 2020. 4. 10.

발의자 : 이영란 의원
김미연 의원

1. 개정이유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우리 시 노후 공동주택을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추가(안 제7조 제1항)
 - 노후 승강기시설(교체비용 10% 이상)
- 보조금 신청주기(3년) 예외단서 추가(안 제7조 제5항)
 -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시 현장 확인 필수(안 제8조 제2항)
 - 보조금 지원 신청시 소속 공무원이 반드시 그 타당성을 조사·확인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선정 기준 구체화(안 제8조 제3항)
 - 공동주택 준공시기, 노후정도, 기 지원횟수 및 금액 고려
- 「순천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시의원 추가(안 제11조 제3항)
 -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노후 승강기시설(교체비용 10% 이상)

동조 제5항 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순천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를 “그 타당성을 조사·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8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지원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공동주택의 준공 시기, 노후 정도, 기 지원 횟수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지원기준에 따라 관리비용의 지원여부 및 규모를 순천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1조 제3항 제1호 다목을 삭제하고 라목, 마목, 바목을 각각 다목, 라목, 마목으로 한다.

제11조 제3항 제2호 가목, 나목, 다목을 각각 나목, 다목, 라목으로 하고,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신설 및 개·보수공사 등을 말한다.</p> <p>1. 부대시설 가. ~ 아. (생략)</p> <p><u>〈신설〉</u></p> <p>2. ~ 3. (생략)</p> <p>② ~ ④ (생략)</p> <p>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생략)</p> <p>2. 보조금을 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주택 <u>〈단서 신설〉</u></p> <p>제8조(지원신청 및 운영) ①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동시설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u>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순천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7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 ----- ----- -----.</p> <p>1. 부대시설 가. ~ 아. (현행과 같음)</p> <p><u>자. 노후 승강기시설(교체비용 10% 이상)</u></p> <p>2. ~ 3.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다만, 법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u></p> <p>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 ----- ----- -----.</p> <p>② ----- ----- ----- <u>그 타당성을 조사·확인하게 하여야 한다.</u></p>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③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알려야 한다.</p> <p>제11조(구성) ① ~ ② (생략)</p> <p>③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p> <p>1. 당연직 위원</p> <p>가. ~ 나. (생략)</p> <p><u>다. 사회복지과장</u></p> <p>라. 건축과장</p> <p>마. 도로과장</p> <p>바. 맑은물행정과장</p> <p>2. 위촉직 위원</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순천시회에서 추천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2명</p> <p>나.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추천한 주택관리사 2명</p> <p>다.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p>	<p>③ 시장은 지원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공동주택의 준공 시기, 노후 정도, 기 지원 횟수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지원기준에 따라 관리비용의 지원여부 및 규모를 순천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p> <p>④ ----- ----- ----- -----.</p> <p>제11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p> <p>1. 당연직 위원</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u>다. 건축과장</u></p> <p><u>라. 도로과장</u></p> <p><u>마. 맑은물행정과장</u></p> <p>2. 위촉직 위원</p> <p><u>가.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u></p> <p><u>나.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순천시회에서 추천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2명</u></p> <p><u>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추천한 주택관리사 2명</u></p> <p><u>라.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u></p>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유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3196호
----------	--------

발의연월일 : 2020. 4. 10.

발의자 : 허유인 의원

1. 제안이유

-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회의록 공개기간을 단축하고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회의록 공개 기간 단축 및 공개 방법 추가(안 제70조 제2항)
 - 6개월을 30일로 단축, 열람 외 사본 제공 방법 추가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조, 「같은 법 시행령」 113조의3 제2항

5. 예산상황 : 해당없음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제2항 “6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을 “30일(단, 심사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0조(회의록) ① (생략) ② 영 제11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의 공개는 <u>6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u> ----- -----.	제70조(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1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의 공개는 <u>30일(단 심사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u> ----- -----.